

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. 9. 3 선고 2014가단5619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론 종결 2015. 8. 27.

판결 선고 2015. 9. 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충남 부여군 C 대 711㎡ 중 별지 도면 표시 (7) 부분 49㎡ 지상 단층 주택을 철거하고,
나. 충남 부여군 C 대 711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충남 부여군 C 대 711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인데,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(1) 부분 49㎡ 지상에 무허가 단층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, 이 사건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강지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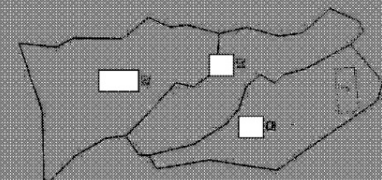
별지

지적현황측량 성 과 도

토지 소재	부여군 [] 1 필	측 적	1 1200
측 량 자	2015년 7월 29일	측량성과도	2015년 7월 29일
	지적기사 []	작성 자	지적기사 []

현 황 표 시

범 례	영 칭
[]	간월외역전
[]	아래빈칸
[]	[]
[]	[]



면 적 표 시

지번 부호	면적(m²)
[]	49
[]	아래빈칸
[]	[]
[]	[]
[]	[]
[]	[]
[]	[]
[]	[]
[]	[]

(특수)지적현황측량 결과도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.

2015년 7월 29일

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 []

비 고 이 측량성과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끝.

